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2011.10.20.

개정 2014.10.30.

개정 2016.10.31.

개정 2020.11.10.

개정 2021.09.09.

개정 2022.12.27.

개정 2024.04.05.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계약규정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계약규정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계약규정 제4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1.10.)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으로 계약규정 제4조

① 항에 따라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2020.11.10.)

③ “관련 주관부서” 라 함은 각급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설비주관부서 또는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1. 심사 중 해당 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외부위원은 계약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선발하여 10인 이상의 외부전문위원단(Pool)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2배수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법학, 경제, 경영, 행정, 건설, 기계 등 해당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개정 2020.11.10.)
  2. 품질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련 분야(전기·에너지, 계약·조달, 건설·감리, 발전운영, 품질 등)협회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소유자 (개정 2022. 12. 27.)
  4. 전기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신설 2020.11.10., 개정 2022. 12. 27.)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전기·에너지, 계약·조달, 건설·감리, 발전운영, 품질 등)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2. 12. 27.)
  7.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 (개정 2020.11.10., 2022. 12. 27.)
- ② 외부위원은 외부전문위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선발하며, 내부위원은 해당 직위에 보직된 자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2. 12. 27.)
- ③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별지 1)과 추천받은 외부위원(별지 2)은 위원회 참석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부서는 외부전문위원단의 주기적 변경·운영 여부 등을 감독한다. 다만, 청렴 옴부즈만 위원은 추천을 받거나 공모형식 없이 외부전문위원단에 포함한다. (신설 2013.06.28.)
- ⑤ 외부전문위원단 명단(Pool)은 본사 계약담당부서에서 관리하며, 사업소 자체

적으로 구성할 경우 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한다.(개정 2020.11.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외부전문위원단의 임기는 3년이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9.09.)

② 임기 중이라도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특정업체에 현저히 유·불리하게 심의를 하는 경우
3.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기타 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6. 제7조에 따른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사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09.09.)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우  
(개정 2020.11.10., 2022. 12. 27.)
6.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7.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8. 위원이 평가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당사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대리참석)** ①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외부 전문위원단(Pool) 중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09.09.)

-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서의 차하위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안건 심의요청 등 개최 필요가 있을 경우 구성한다. (개정 2021.09.09.)

-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심의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 12. 27.)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7.)

1.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2. 출석위원 중 외부위원의 과반수 출석 (단, 외부위원이 출석한 위원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내부위원의 수를 하향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④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각호, 제6조제2항 각호, 제7조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21.09.09.)

**제9조의2 (사전검토)** 심의요청부서는 계약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그 밖의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 반드시 사전 법률검토 또는 조달청 등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4.05.)

**제10조(위원회 운영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안건은 제14조 2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 또는 사외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09.09.)

**제11조(대면심의)** ①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개정 2020.11.10., 2021.09.09.)

② 사업소에서 본사의 외부전문위원단(pool)을 활용하는 경우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자 등에게 화상회의 개최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안건의 의견 청취는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회의록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

자 명단, 상정 안건, 결정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 관련문서 보존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 등 공개 및 통지)** ①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에 관한 심의 결과는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 또는 사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9.)

②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및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②항의 시행일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09.09.)

**제15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9.)

② 이의신청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대면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9.)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9.)

④ 위원회의 재결 전까지는 당초의 처분효력은 유효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09.09.)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인(위원, 참고인)에게는 당사 교육훈련세칙 별표2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9.09.)

제19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청 렬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 심의건명 :

- 위 본인은 20 년 제○차 『계약심의위원회』의 상기 심의와 관련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아울러, 상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수주,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 청 렬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위 본인은 한국남부발전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아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심의건명 :

- 아울러, 상기 안건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 한국남부발전사장 귀 하

※ 심의가 완료된 후 소정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 사전통지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서 예시

### 처분사전통지서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제출기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한국남부발전 OO발전본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통보서

수 신 : ○ ○ ○ ○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관련하여 귀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제한 업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li> <li>○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중 해당하는 사유)</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중 해당하는 사유)</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서 해당하는 항목)</li> </ul>		
	제재 년월일		만료 년월일	
	제재기간	개월		
	제제사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인**

### ※ 유 의 사 항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등 관련 문의 사항은 통보서에 기재된 담당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